이 사 회 규 정

이사회규정

목 ㅊ

	제1조 목적
	제2조 정의
	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1
	제4조 이사회의 구성
	제5조 이사회의 의장
	제6조 선임비상임이사 등
	제6조의2 노동이사
	제6조의3 노동이사의 처우2
	제6조의4 노동이사의 권한과 의무
	제7조 이사회의 소집
	제8조 의안제출
	제9조 의결
	제10조 보고
	제11조 서면결의
	제12조 심의 지원
	제13조 회무 처리
	제14조 회의록 등의 보존 및 관리
	제15조 이사회 내 위원회
ŀ	루 칙

이사회규정

1981. 8. 7 제정(규정제 2호) 1991. 3.23 개정(규정제243호) 1994.10. 7 개정(규정제372호) 1995. 7.31 개정(규정제395호) 1996.10.21. 개정(규정제498호) 1999. 3.13 개정(규정제498호) 2002. 9.11 제저정관리규정 개정(규정제613호) 2005. 8.11 개정(규정제613호)

2006.12.19 개정(규정제783호) 2007. 5. 3 전문개정(규정제792호) 2008. 7.31 개정(규정제830호) 2008.10.27 개정(규정제840호) 2017.11.29. 개정(규정제1158호) 2022.06.29. 전부개정(규정제1380호) 2022.07.27. 일부개정(규정제1382호) 2023.06.28. 일부개정(규정제1432호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"이사"라 함은 공단의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를 말한다.

2005.12.22 개정(규정제728호)

- 2. "이사회 업무 주관부서"라 함은 공단의 이사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.
- 3. "제안부서"라 함은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부서를 말한다.
- 4. "실무자"라 함은 안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직원을 말한다.

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한국교통안전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의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「한국교통안전공단 정관」(이하 "정관"이라 한다)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개정 20220.7.27>

제4조(이사회의 구성) ① 이사회는 이사장, 4명의 상임이사 및 6명의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.

② 비상임이사에는 공단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(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)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07.27>

제5조(이사회의 의장)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며, 이사회 회의를 주재한다.

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「직제규정」별표 1의 직제 순에 따른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이사장과 상임이사 전원이 이사회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비상임이사, 선임자,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선임비상임이사 등) ① 공단에 선임비상임이사 1명을 두며,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

선(互選)한다.

② 선임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③ 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안건 그 밖에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 상임이사회의를 소집·주재할 수 있고, 이사장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④ 비상임이사는 이사장에게 이사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 이경우 이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6조의2(노동이사)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일명된 비상임이사를 노동이사라 한다

②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.

- 1.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상 노동조합의 조합원
- 2. 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」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

[본조신설 2022.07.27.]

제6조의3(노동이사의 처우) ① 이사장은 노동이사 및 노동이사였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이사로 임명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인사, 포상,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불이익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이사장은 노동이사가 그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부서 또는 직무에 배치하여야 한다.

③ 이사장은 노동이사에게 그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 제공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하고, 노동이사는 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
④ 노동이사의 이사회 출석 및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 를 제공한 시간으로 본다.

⑤ 노동이사에게는 노동이사 업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드는 실제 비용은 지급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3.06.28.]

제6조의4(노동이사의 권한과 의무) ① 노동이사는 「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과 「상법」등에 따른 비상임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진다.

② 노동이사는 「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과 「상법」등에 따른 비상임이사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.

[본조신설 2023.06.28.]

제7조(이사회의 소집) ① 이사회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

- 다. 다만, 회의에 올릴 안건이 없으면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
- 의 회의소집요구서를 이사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8조(의안제출) ① 이사회에 상정하는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.

- ② 이사회에 상정하는 의안은 제안부서에서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결재문서 사본과 함께 회의 개최 10일 전(안건이 다음년도 예산안인 경우는 20일전)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③ 간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건에 의안번호(연도별 부여) 및 일자를 기재한 후, 회의 개최 7일전(안건이 다음년도 예산안인 경우는 15일전)까지 이사회 구성원에게 안건 을 배부하고 참석을 요청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9조(의결)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②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장이나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장이나 이사는 제1항에 따른 재적이사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-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 <개정 2023.06.28.>
- 1. 예산과 예산우영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2. 경영목표와 사업계획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
- 3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- 4. 자금의 차입 및 물자도입에 관한 사항
- 5. 기구와 정원에 관한 사항
- 6.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
- 7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
- 8.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
- 9. 「직제규정」,「인사규정」,「보수규정」,「취업규정」,「예산회계규정」,「복리후생규정」,「이사회규정」,「임원추천위원회운영에 관한 규정」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사항
- 10. 분사무소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
- 11.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한 사항. 다만, 1억원 미만의「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
- 률, 제242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른 출자는 제외
- 12.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선임 및 위원 수에 관한 사항
- 13.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

- 14. 잉여금의 처분
- 15. 생산제품과 서비스의 판매가격
- 16. 이사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이사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 경영목표와 성과 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안의 작성에 관한 사항
- 17. 이사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계을리하는 등 이사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, 이사회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사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하기 위한 사항
- 18. 비상임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비상임이사로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, 이사회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비상임이사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하기 위한 사항 <신설 2023.06.28.>
- 19. 상임이사의 해임, 정직, 견책 또는 그 밖의 조치에 관한 사항

[제9조제3항제18호에서 이동 <2023.06.28.>], <개정 2023.06.28.>

20. 법 및 영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

[제9조제3항제19호에서 이동 <2023.06.28.>]

- 21. 다른 규정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<신설 2023.06.28.>
- 22.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[제9조제3항제20호에서 이동 <2023.06.28.>]

- ④ 제3항의 승인사항이 아니라도 이사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내 용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10조(보고) ① 이사회에 대한 이사장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이사장이 제6조제4항에 따른 비상임이사의 자료요구에 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비상임이사에게 소명한 사실
- 2. 국정감사, 회계감사,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계획 및 실적
- 3.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
- 4. 다른 규정에서 이사회보고 하도록 정하는 사항 <신설 2023.06.28.>
- 5. 그 밖에 이사회가 이사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

[제10조제1항제4호에서 이동 <2023.06.28.>]

- ② 이사회에 대한 감사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비상임이사가 2명 이상의 연서로 공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(監事)에게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(監査)를 요청한 경우, 감사(監事)가 이에 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그 사유를 해당 비상임이사에게 소명한 사실
- 2. 감사가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
- 제11조(서면결의) ① 이사회 회의는 이사회 구성원이 출석하는 대면회의(영상회의를 포함한다)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서

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② 이사장은 서면에 의한 이사회를 개최하게 된 사유를 문서로 작성하여 이사회 구성원에게 알려야 한다.

제12조(심의 지원) ① 이사장은 이사회 구성원에게 공단의 경영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, 비상임이사의 안건 검토를 위해 시설,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제안부서의 장은 이사회 안건 배부 및 소집통보 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을 하여야 하며, 자료제공을 요구받을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사유로 자료를 제공함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자료를 요청한 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제안부서의 장은 이사회 개최 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실무자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.

제13조(회무 처리) ① 이사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이사회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.

② 간사는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작성된 회의록은 다음 이사회에서 보고 및 확인을 거쳐야 한다.

③ 이사회 담당부서의 장은 이사회 의결사항이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안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4조(회의록 등의 보존 및 관리) ① 회의록, 서면결의서, 회의원안, 기타 관계서류 등이사회 관련 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22.07.27>

② 이사회 회의록은 경영상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6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통합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
제15조(이사회 내 위원회) 이사회는 특정한 안건의 사전심의와 경영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22.07.27.>

부 칙 <규정 제2호, 1981.08.07.>

이 세칙은 1981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243호. 1991.03.23.>

이 세칙은 199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372호, 1994.10.07.>

이 세칙은 1994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395호, 1995.07.31.>

이 세칙은 199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424호, 1996.10.21.>

이 세칙은 1996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498호, 1999.03.13.>

이 세칙은 1999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제규정관리규정) <규정 제613호, 2002.09.11.>

이 세칙은 2002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최 <규정 제703호, 2005.08.11.>

이 세칙은 2005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규정 제728호, 2005.12.22.>

이 세칙은 2005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- 부 **최** <규정 제783호, 2006.12.19.>
- 이 세칙은 200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 - **부 최** <규정 제792호, 2007.05.03.>
- 이 세칙은 2007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.
 - 부 **최** <규정 제830호, 2008.07.31.>
- 이 세칙은 2008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 - 부 **칙** <규정 제840호, 2008.10.27.>
- 이 세칙은 2008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 - 부 최 <규정 제1158호, 2017.11.29.>
- 이 세칙은 2017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 - 부 칙 <규정 제1380호. 2022.6.29>
-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경과조치)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이사회 관련 사무는 이 개정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.
 - 부 **칙** <규정 제1382호, 2022.07.27>

-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이 개정 규정 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는 이 규정 시행일 이후 노동이사를 임명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제2조(준비행위에 관한 사항) 이 규정 시행 전 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른 노동이사 임명에 필요한 사무처리를 할 수 있다.

부 칙 <규정 제1432호, 2023.06.28.>

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■ 이사회규정 [별지 제1호서식](제7조제3항 관련)

이사회 회의소집 요구서

이사회 의장님께

아래와 같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청합니다.

- 아 래 -

- 안 건 명 :
- 주요내용 :

20 년 월 일

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회

- (비)상임이사 ○ (인)
- (비)상임이사 ○ (인)
- (비)상임이사 ○○○ (인)
- (비)상임이사 ○ (인)

■ 이사회규정 [별지 제2호서식](제8조제2항 관련)

(표 지)



의 안 번 호 1)	제 호
의 결 (보 고) 연 월 일	 (년도 제 차)

결	
(보고)	
사	
항	
	l

의

이사회안건3)

제	안	자 4)			
제출 연월일					

¹⁾ 고딕, 글자크기 15

²⁾ 고딕, 글자크기 16

³⁾ 고딕, 글자크기 15

⁴⁾ 고딕, 글자크기 15

(첨부물)

안건 :

- 1. 의결(보고)주문⁵⁾⁶⁾
- 2. 제안이유
- 3. 주요내용
- 4. 참고사항
 - 가. 관련근거 :7)
 - 나. 제안부서 :
 - 다. 예산조치 :
 - 라. 관련부서 합의 :
 - 마. 기 타:
- 5. 별 첨

⁵⁾ 고딕, 글자크기 16 6) 줄간격 230 7) 신명조, 글자크기 15